

## 축산법 시행 신중 기하길...

김동성  
(본지 편집과장 대리)

### “양돈업자는 매일 똑같은 두수만 키우란 말입니까?”

불황의 문턱에서 정부가 모든 감축 명령을 내리는 등 돼지 수급조절에 적극 개입하면서, 그 동안 조용히 생산활동을 영위해 오던 양돈업계가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고 있다.

한동안 협회 사무실이 양돈업 등록업자들로 메어지고 농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시외전화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양돈업자는 매일 똑같은 두수만 키우란 말입니까, 매일 똑같은 두수만 키워야 한다면 이게 어디 사업인가요?”

“대기업은 수출이다, 종돈업 등록이다, 계열화다 하고 다 빠져 나가고, 전업규모에만 감축 명령을 내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매일 도에서 오라, 군에서 오라 난리들을 치고 있으니, 원 참.”

돼지를 한평생 키우고 있다는 촌로에서부터 몇년 전에 양돈업에 뛰어들었다는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똑 같은 말을 던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원망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었다. 단군이래 돼지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판에서 명령서가 날아들긴 생전 처음이었으니까...

잘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84년 8월 대기업의 신규 양돈업 참여를 규제하고, 또 기존 대규모 양돈업자들의 무제한 증식을 억제해 소규모 양돈농가들의 소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축산법을 개정·공포했다.

이때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 골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업자를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조절 상 필요할 때는 생산, 사육, 출하조절 등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50두 이상 4백99두까지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5백두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규모 상한선은 법 개정취지에 따라 1천두로 한정시켰다. 또 종돈 20두 이상 보유업체는 종돈업을 등록 토록 했다.

### 2년전 등록당시의 두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감축토록 한 것은 생각해 볼 일

그러면 정부의 축산법 시행시 양돈농민들이 세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점을 크게 대별하면 다음의 몇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축산법을 시행하면서 대상농민들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대상 양돈농가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 농가는 불법 양돈으로 관계당국에 고발까지 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둘째, 산업의 자연 신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정부당국은 작년 12월에 감축명령을 내리면서 '85년 등록당시의 모돈 두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수를 모두 감축토록 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두당 219,750원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양돈업자들은 이 점을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돈업자들은 법이 처음 시행되는 '85년초에 일괄적으로 양돈업을 등록했다.

그후 양돈 호황에 따라 자연히 사육두수가 증가되었고, 또 사업성격상 해가 갈수록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돈업자들은 매월 시·군에 사육두수 증감 현황을 보고하여 사육두수의 목시적인 인정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돈업 등록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사육현황을 보고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최초 등록당시의 두수대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금년 하반기에 불황이 예견돼 정부에서 감축명령을 내리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동안 대기업에는 2년간의 감축유예기간을 주고 양돈업 등록업자에게는 1개월내에 줄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양돈업 등록업체 관리 대장에 등재된 두수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 문제가 이쯤 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시·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 적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양돈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농가에게 등록을 만류하기까지 했다 한다.

네째,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양돈장 방문 조사·확인으로 질병을 전파할 염려가 높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돼지는 질병에 민감한 동물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 농장, 저 농장을 돌아다니며 돈사에 들어가 돼지수를 세는 행위는 하나님을 얻다 다른 하나님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또 등록두수에서 단 1두만 초과해도 감축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각급 축정기관에 통보·확인하는 등의 행정조치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얘기가 많다.

##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양돈업자들의 사육두수 증가

다섯째, 등록업체에 비해 대규모 허가업체에 예외규정으로 특혜조치를 주고 있어, 오히려 입법취지와는 달리 당초 허가당시보다 대규모 양돈업자들의 사육두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은 종돈업 등록에 관한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종돈으로 필요치 않은 모돈을 종돈으로 전환 등록함으로써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도 현재 35개의 허가업체 중 34개 업체가 종돈업 등록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허가당시 모돈수는 36,674두였는데 비해, 86, 11, 25 현재의 모돈수는 29,709두이고 종돈등록두수가 8,989두로 합계 38,798두이다. 이 숫자

는 허가당시보다 2,100두 늘어난 수치다.

그렇다면 축산법 개정 취지인 대규모 양돈업자의 신규 양돈업 참여 규제 및 기존 대규모 양돈업자의 규모억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전업농가들은 이 점 뽑시 경계하고 있다. 누가 얘기했듯이 돼치는 다 똑같은 돼진데, 수출용 돼지 다르고, 계열화 돼지 다르고, 종돈용 돼지가 다르다면 허가 상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다.

### 신규등록시 모돈 50두로 제한하는 조치는 사실상 양돈업 등록 봉쇄 조치로 받아 들여져

또 현재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등록을 모돈 50두로 제한하고 폐수처리 시설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행정조치는 사실상 양돈업의 등록을 봉쇄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4일 각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 양돈농가들이 신규로 양돈업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 규모는 모돈 50두로 하고 초과두수는 1개월 이내에 감축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같은 결과 농촌에서는 양돈농가들이 양돈업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등록 기피시 적발이 쉽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은 모돈 감축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상태의 양돈업자들이 현재 사육중인 모돈을 사실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조치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양돈농가들의 이와같은 지적을 허심탄회하게 받아 들여 법 시행에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하겠다.

또 감축명령이 능사가 아니라 생산자 단체 위주의 자율적인 감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거미줄에 낙타는 안걸리고 파리만 걸린다”는 전업농들의 인식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감축명령 이전에 생산자 스스로의 자율감축 아쉬워

협회는 이와같은 현지 양돈농가들의 여론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곧 관계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협회가 관계당국에 제출할 개선방안은 정기총회에서 본회 이사, 지부장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참석자 모두가 찬동한 안이므로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정부가 모돈 감축명령을 내리는 등 수급조절을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돈불황을 사전에 막아 양돈농가들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돈인들도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79년과 83년 두차례에 걸쳐 혹독한 불황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사육두수 유지에만 급급하여 양돈인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타율이 개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연히 규모간의 갈등을 노정시키지 말고 감축명령 이전에 양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한대로 자율적으로 모돈 10%를 감축하는 성숙한 양돈인상을 보여야 하겠다.

입으로만 결의해 놓고 나하나쯤 하고 모두 뒤로 빠진다면 결국 누가 손해보겠는가?

